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시 보

제1333호 2024. 5. 17.(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4-85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2

○ 삼척시 공고 제2024-857호 2024~2025년도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공고 -- 5

○ 삼척시 공고 제2024-859호 2024년 삼척시 도시재생 청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 12

○ 삼척시 공고 제2024-860호 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5

공람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공고 제2024-85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4. 5. 14. ~ 2024. 5. 29. (15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24. 5. 30.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1	나.당사자	성명(명칭)	김 윤 ○
		주 소 (대장상주소)	자지리 163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원동 110-2 주1 1층, 목조, 주택, 연면적(39.95㎡)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33-570-3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14.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연 락 처 : 033)570-3459

삼척시 공고 제2024 - 857호

2024/2025년도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공고

2024/2025년도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이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승인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2024. 6. 14.(금)까지 우리시 해양수산과로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 033-570-34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개발계획 수면 도면은 삼척시 해양수산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삼 척 시 장

□ 제출서류

1.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
2.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3.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양식업)면허증 또는 어업(양식업)허가증 사본[어업(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1부.
4. 어업(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5.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1부.
6. 어업(양식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2024~2025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신 청 내 용					승인여부		검토결과 (승인조건)
어업별	위 치	수면번호	면 적	개발사유	승 인	불승인	
소 계		**4개소**	**72.64ha**		**72.64ha**	-	**▪ 마을어업 : 4건/ 72.64ha**
마을어업	용화리 지 선	①	4.87	재개발 (기간만료)	4.87	-	◦ 기존 마을어업(제2004-3호)을 동일 면적으로 개발 ◦ 기존어장 청소 후 개발
마을어업	교동(후진) 지 선	②	43.47	재개발 (기간만료)	43.47	-	◦ 기존 마을어업(제2005-1호)을 동일 면적으로 개발 ◦ 기존어장 청소 후 개발
마을어업	교동(광진) 지 선	③	12.8	재개발 (기간만료)	12.8	-	◦ 기존 마을어업(제2005-3호)을 동일 면적으로 개발 ◦ 기존어장 청소 후 개발
마을어업	덕산리 지 선	④	11.5	재개발 (기간만료)	11.5	-	◦ 기존 마을어업(제2005-5호)을 동일 면적으로 개발 ◦ 기존어장 청소 후 개발

❑ 2024~2025년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신 청 내 용					승인여부		검토결과 (승인조건)
어업별	위 치	수면번호	면 적	개발사유	승 인	불승인	
소 계		**6개소**	**118.35ha**		**118.35ha**		**▪ 패류양식업 : 2건/ 6.0ha** **▪ 협동양식업 : 4건/ 112.35ha**
패 류 양 식 (바닥식)	덕산리 지 선	⑤	3.0	재개발 (기간만료)	3.0	-	◦ 기존 패류양식(제2004-2호)을 동일 면적으로 개발 ◦ 기존어장 청소 후 개발 ◦ 양식재해보험 가입 조건 승인
패 류 양 식 (바닥식)	덕산리 지 선	⑥	3.0	재개발 (기간만료)	3.0	-	◦ 기존 복합양식(제2005-7호)을 동일 면적으로 개발 ◦ 기존어장 청소 후 개발 ◦ 양식재해보험 가입 조건 승인

신 청 내 용					승인여부		검토결과 (승인조건)
어업별	위 치	수면 번호	면 적	개발사유	승 인	불승인	
소 계		**6개소**	**118.35ha**		**118.35ha**		**▪ 패류양식업 : 2건/ 6.0ha** **▪ 협동양식업 : 4건/ 112.35ha**
협 동 양 식	용화리 지 선	⑦	5.25	재개발 (기간만료)	5.25	-	◦ 기존 협동양식(제2004-4호)을 동일 면적으로 개발 ◦ 기존어장 철거 및 청소 후 개발 ◦ 양식재해보험 가입 조건 승인
협 동 양 식	교동(후진) 지 선	⑧	74.6	재개발 (기간만료)	74.6	-	◦ 기존 협동양식(제2005-2호)을 동일 면적으로 개발 ◦ 기존어장 철거 및 청소 후 개발 ◦ 양식재해보험 가입 조건 승인
협 동 양 식	교동(광진) 지 선	⑨	16.6	재개발 (기간만료)	16.6	-	◦ 기존 협동양식(제2005-4호)을 동일 면적으로 개발 ◦ 기존어장 철거 및 청소 후 개발 ◦ 양식재해보험 가입 조건 승인
협 동 양 식	덕산리 지 선	⑩	15.9	재개발 (기간만료)	15.9	-	◦ 기존 협동양식(제2005-6호)을 동일 면적으로 개발 ◦ 기존어장 철거 및 청소 후 개발 ◦ 양식재해보험 가입 조건 승인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국적	
	주소	
배우자 및 직계비속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개발계획 내용	어업의 종류	
	포획물 · 채취물	
	수면의 번호 제 호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 ha 수심 : m
	수면의 위치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1부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4.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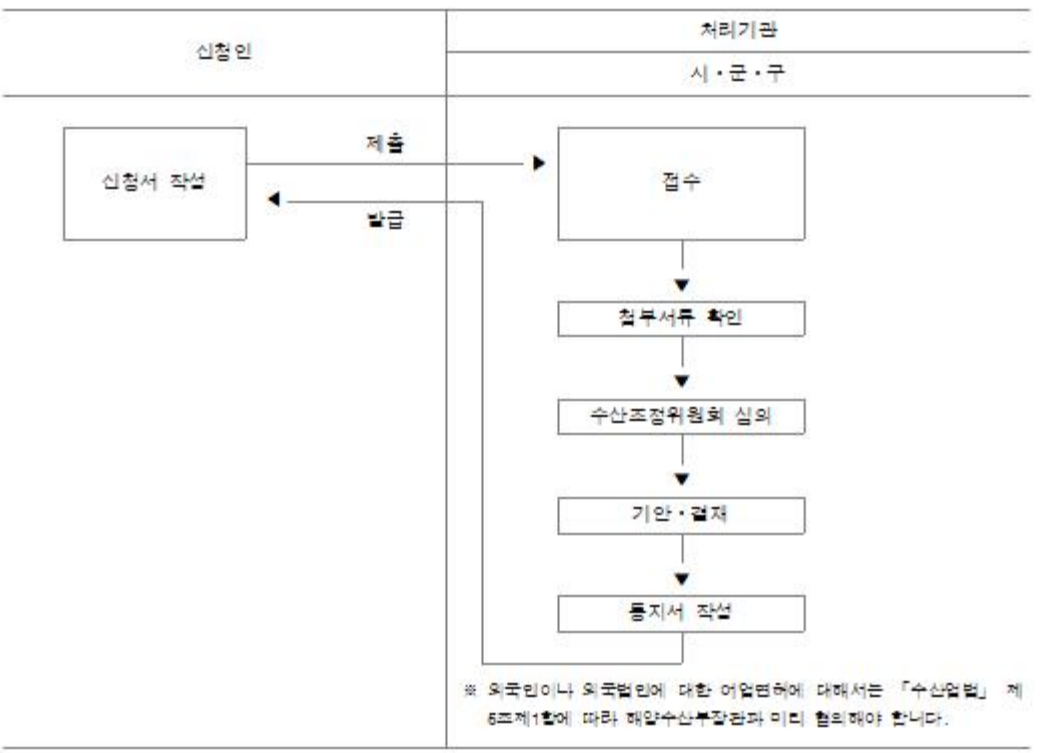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2. 8.>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국적	
	주소	
배우자 및 직계비속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개발계획 내용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수산물	
	수면의 번호 제 호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ha 수심: m
	수면의 위치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여권번호 기재는 외국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양식업 면허증 또는 양식업 허가증 사본(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다.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식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라. 포기하려는 양식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마.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의 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68조에 따른 외해양식 시험양식업의 추진 내용 및 결과(「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제3항제2호의 자만 해당합니다) 나.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 있는 양식장의 외해 이설 계획(「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합니다)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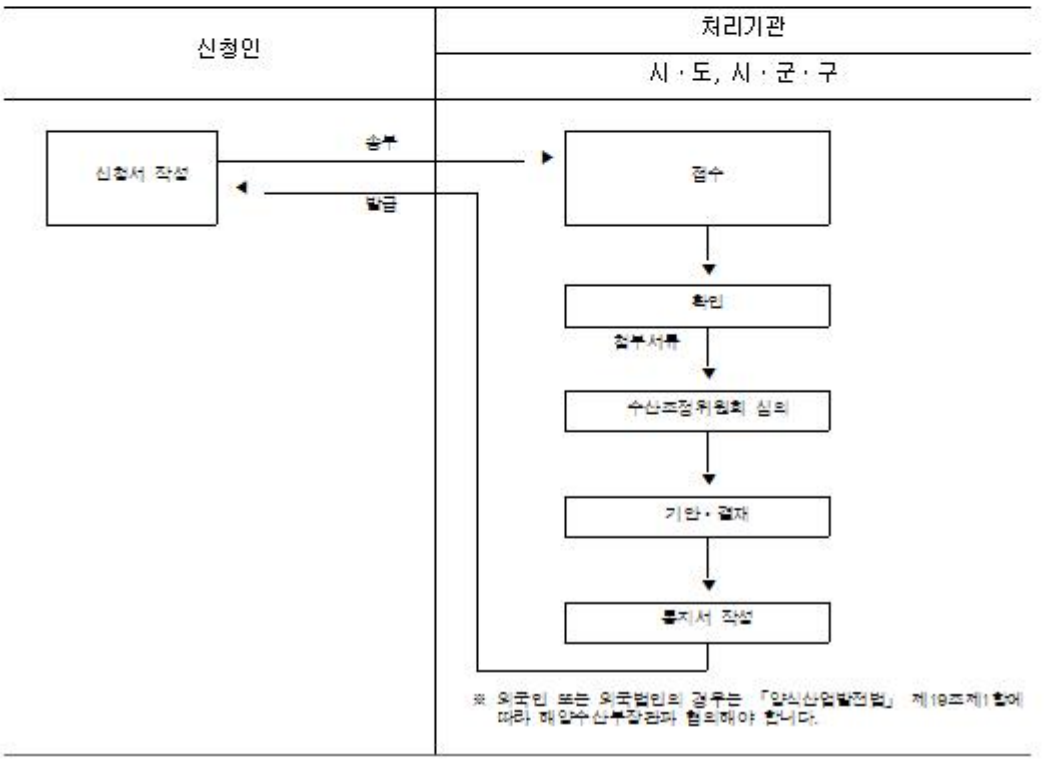

삼척시 공고 제2024 - 859호

2024년 삼척시 도시재생 청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삼척시 및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도시재생 거점 시설『창업모텔 '모임'』과 연계하여 미래 세대로서 예비·초기 창업가를 대상으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삼척다운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2024년 삼척시 도시재생 청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청년 창업가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관심 있는 지역 청년 예비·초기 창업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일

삼 척 시 장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로컬 창업 실험가 간 협업을 통해 지역 자원(경제적 및 문화적 확산)의 활용 가치 제고 및 지역 창업의 생태계 활성화 도모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예비 및 초기 창업자(신청 자격 참조)

□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24. 5. 20.(월) ~ 2024. 6. 5.(수)** (17일간)

※ 사업설명회 : **2024. 5. 29.(수) 15:00**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

□ 모집규모

○ 7팀 / 팀당 3,000천원 ~ 6,000천원(총사업비 30,000천원)
(2인 이상 팀 참여 가능, 자부담 10%)

□ 사업기간 : 2024. 6월 ~11월

□ 지원내용

○ 자금지원 : 지역 가치 창출 및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교육 : 특강 및 지역 특성과 밀착된 실무 중심의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사업절차 및 추진일정

신청 접수 및 공고	→	서류평가 및 요건검토	→	발표평가
'24.5.20.(월)~6.5.(수)		'24.6.7.(금)		'24.6.14(금)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육	←	선정공지
'24.6월 말		'23.6.18.(화) (예정)		'24.6.17.(월)

↓

수행상황 중간점검	→	정산 및 성과공유회
'24.7월~11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 상기 사항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세부지원내용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지원 세부사항</th></tr>
<tr><td rowspan="4">개발지원</td><td>메뉴개발</td><td>- 메뉴개선 및 신메뉴 개발에 따르는 컨설팅 및 제작비 지원</td></tr>
<tr><td>제품개발</td><td>- 시제품 개발에 따르는 재료비 및 제작비 지원</td></tr>
<tr><td>제품진열</td><td>- 제품 진열 개선에 따르는 제작비 및 VMD 지원</td></tr>
<tr><td>포장개발</td><td>- 포장 디자인 및 제작비 지원</td></tr>
<tr><td>홍보·마케팅</td><td colspan="2">- 사진· 동영상 촬영 및 홍보물 제작, 온라인 진출 지원, 홈페이지 개발 및 SNS 상세페이지 등</td></tr>
<tr><td>브랜드 개발</td><td colspan="2">- 네이밍, 로고, 캐릭터 등 브랜딩 및 특허 등록 지원</td></tr>
<tr><td>창업교육</td><td colspan="2">- 경영, 기술, 자문을 위한 전담, 전문 멘토링 연계 비즈니스(BM)구체화</td></tr>
<tr><td>연계지원</td><td colspan="2">○ 창업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지역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등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전문가 컨설팅</td><td>- 기업 경영, 기술 및 실무 전문가를 통하여 사업화 지원 전후 단계의 컨설팅 지원</td></tr>
<tr><td>네트워킹</td><td>- 지속적 정보 제공을 통한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교류 가속화</td></tr>
</table></td></tr>
</table>

< 비목 세부 기준 >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창업자(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기술이전비, 시험·인증비, 기자재 임차비,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법인설립비 등 (연간회비, 임원회비, 후원성, 자격증 취득, 전문서적 구입 비용 제외)
홍보비	- 창업자(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홍보 비용
창업교육훈련비	- 창업자(기업) 대표 등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창업 활동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출장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 소요되는 비용

Ⅲ 신청 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 삼척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 참여 예비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정부·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사업의 수혜를 받지 않은 자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기간이 3년 이내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삼척시 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창업자

■ 예비창업자란 신청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기존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 기준에 따라 확인 필요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 업력 3년 초과 기업(법인)이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 공고일 이전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완료한 자로, (참고1) 기준에 따라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종합격자는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로컬창업실험비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제외 대상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 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지원)가능
3.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참고 4) 참조
   * 단,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협약종료)자 및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3년 5월 6일)일 경우 신청 가능 (동 사업에 최종 선정 되었을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에 의거한 사업운영 세부사항
   『제26조 (중복참여) ①지원사업은 지침 제17조5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중점육성으로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사항을 두지 않는다. ②창업기업은 지원사업의 경우 1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협업, 네트워킹 등 후속 및 지원사업의 연계지원의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타 (중앙,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단,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3년 5월 6일)일 경우 신청가능하나, 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5.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6.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8.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Ⅳ 신청 · 접수기간

□ 신청 · 접수기간 : '24. 5. 20.(월) ~ 6. 5.(수) 17:00까지

※ 제출서류 전체 제출분에 한함

※ 서류 누락, 마감 기한 후 제출 시 접수 불가 (접수 시스템 내 접수시간 기준)

□ 신청방법 : 이메일 / 방문접수 신청 · 접수

제출방법	제출처
이메일	▪ **(메일 주소)** sam65_urc@naver.com ▪ **(메일 제목)** [단체명(이름)_청년창업실험비 지원사업 신청합니다. (예) [함성(김수*)_청년창업실험비 지원사업]신청합니다.
방문접수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1층 ☎ 033-576-0327

□ 필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서식1] 신청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2	[서식2] 사업계획서	▪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3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4	[서식4]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5	[서식5] 서약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6	[서식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	▪ 서명날인 여부 확인
7	[서식7] 사업자등록증	▪ (예비창업자) 주민등록초본 ▪ (초기창업자) 사업자 생년월일을 통해 지원자의 청년 예비·초기창업자 기준(만 39세 이하) 충족 여부 확인
8	[서식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초기창업자) 국세청 홈택스 정부서비스 / 정부24

V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한다.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창업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시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필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지원 종료 다음 해부터 3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필히 응하여야 한다.

VI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자격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평가 실시 후 1.5배수 내외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10분발표, 질의응답 (10분)	'발표평가(100점)' 고득점자 순 (단,60점미만제외)
2024. 6. 7.(금)	2024. 6. 7.(금)	2023. 6. 14.(금)	2024. 6. 17.(월)

※ 추진일정 심사방법 등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기준

연번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 점
1	지역성 (20)	- 지역 자원 활용 방안 * 로컬 관련 사업계획 달성(시제품·서비스 제작 등) * 매출 발생, 지역주민프로그램 운영, 지역 방문객 확대 등	5점
		- 지역 중심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 및 혁신성	15점
2	실현 가능성 (30)	-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문제 인식) 및 필요성	10점
		- 창업 아이템 실현 및 구체화 방안 (차별성)	20점
3	성장 전략 (30)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 진입 사업화 전략	20점
		- 지원금 운용 계획 및 자금 조달·활용 계획	10점
4	협업성 (20)	- 기업 구성 및 보유 역량	10점
		- 외부 협력 현황 및 활용 계획	10점
계			100점

※ 평가점수 평균의 60점 미만인 경우 선발 제외
(항목별 최소 득점기준 미만인 경우에도 선발 제외)

※ 서류 및 인터뷰 평가의 지표와 배점은 동일

□ 최종선정

○ 서류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 평가 실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성, 실현가능성, 성장 전략, 협업성에 대해 발표 평가로 최종 선정팀 선정

서류평가(100점)		발표 평가 (100점)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 선발	⇒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 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 과정 중 탈락, 선정 취소,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

○ 전 평가 과정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발표 평가는 (예비)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삼척시에서 정하는 바 및 사업 관리 기준에 따르며, 공고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사업 중도 포기 시에는 사업 선정 취소, 삼척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지방재정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행안부 예규「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필히 수행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붙임 1. 청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 창업여부 기준

창업이력	신청기업 구분 (판단기준)	상세 구분			창업여부
상속 / 증여	개인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변경		창 업
	법인	상속(증여)받은 사업과	동종유지		불인정
			동종의 신규법인 설립		창 업
			이종변경		창 업
창업이력 없음	개인 / 법인	사업자 신설			창 업
창업이력 있음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불인정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창 업
			동종창업		불인정
				폐업 3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 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창 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불인정
				동일인이 아닌 경우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전환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창 업
			이종창업		창 업
			동종창업		불인정
				폐업 3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2년 초과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자회사 해당		불인정
			자회사 해당되지 않음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창 업
		기존법인의 형태변경 (조직변경 등)	동종유지		불인정
			이종변경		창 업

1. 이종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 같은 업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동일인"이란, 개인사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함
   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란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과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
4. 창업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5. [경과조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2020.10.8)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
6. "창업여부"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 **단,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 가능**

참고 2 신청제외 대상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 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지원)가능

3.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및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참고 4) 참조
   * 단,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협약종료)자 및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3년 5월 6일)일 경우 신청 가능(동 사업에 최종 선정 되었을 경우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에 의거한 사업운영 세부사항

   『**제26조 (중복참여)** ①지원사업은 지침 제17조5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중점육성으로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사항을 두지 않는다. ②창업기업은 지원사업의 경우 1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협업, 네트워킹 등 후속 및 지원사업의 연계지원의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단,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3년 5월 6일)일 경우 신청가능하나, 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5.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6.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7.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8.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참고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 그 밖에 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구분	'18년 ~ '23년 (지원(신청)제외 대상 사업)
1	○ 초기창업패키지(舊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2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3	○ 외국인기술창업 지원사업
4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5	○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6	○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2016년)
7	○ 스마트벤처캠퍼스(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8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연계지원, 창업기획사)
9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3단계)
10	○ 재도전성공패키지 (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11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집중육성)
12	○ 창업인턴제(사업화)
13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14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15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16	○ 창업도약패키지
17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 위 사업에 선정되어 완료한 자(협약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은 본 사업 참여 불가

- 2024년 삼척시 도시재생 -
청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4. . .

창업 분야		기업명(대표자)		창업(예정)일	
창업아이템명					
창업아이템 설명					

신청자	성 명(대표자)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경력사항	
	주 소				
	연락처	전화		휴대폰	
		E-mail			
	경력사항	입사연월	퇴사연월	근무처	업무분야
	기술/자격증/입상실적	취득연월	기술/자격증/입상실적		시행처
	타 지원사업 참여이력	연/월	타 지원사업 참여이력 등 현황기재		
			(지원사업) (지원내역)		
			(지원사업) (지원내역)		
팀원	성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소	
	연락처			연락처	
	현재소속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원)생, 미취업자 등		현재소속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원)생, 미취업자 등
	경력사항			경력사항	

위와 같이 2024년 삼척시 도시재생 청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삼척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참가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이행각서, 중소기업지원사업 시스템 정보 활용동의서, 신용정보조회서,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서식 1〉

사 업 계 획 서

☐ 일반현황

창업(예정)기업명		창업분야	※ 참여신청서와 동일하게 기재
창업아이템명		사업비 (지원금)	3백만원 한도 이내로 작성
		산출물(목표)	

☐ 창업아이템 개요(요약)

소 개	※ 본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할 제품·서비스 개요(사용 용도, 사양, 가격 등), 핵심 기능·성능, 고객 제공 혜택 등 ※ 예시 : 가벼움(고객 제공 혜택)을 위해서 용량을 줄이는 재료(핵심 기능)를 사용	
진출 목표시장	※ 진출하려는 목표시장의 규모·상황, 경쟁 강도, 향후 전망(성장성), 고객 특성 등	
경쟁사 대비 차별성	※ 경쟁제품·서비스 대비 예비창업팀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경쟁력(보유역량) 등	
산출물 및 개발단계	※ 협약기간 내 개발 예정인 최종 산출물(형태, 수량 등) 및 현재 개발단계 등 * 개발단계 : 아이디어 기획, 핵심 기술 확보, 시제품 제작 등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사진(이미지)·설계도 등 삽입(해당 시)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사진(이미지)·설계도 등 삽입(해당 시)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지역기반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및 목적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및 목적	※ ①외적 동기(사회·경제·기술 분야 국내·외 시장의 문제점·기회 등), ②내적 동기(대표자 및 예비창업팀의 보유역량, 가치관, 비전 등)의 관점에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동기를 기술 ③ 창업 아이템의 목표 시장 자유롭게 기술

☐ 실현 가능성

창업 아이템의 개발단계 및 차별화	※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방안 (산출물-형태,수량 등), 개발 방법, 현재 시점의 진행(준비)정도 등 경쟁제품·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에 대해 예비창업팀의 보유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 기재

□ 성장전략

성장전략

1. 사업화 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 사업화 아이템 관련 제품·서비스의 수익화를 위한 수익 모델 (비즈니스모델) 등 기재

※ 목표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생산·출시, 홍보·마케팅, 유통·판매, 인력·네트워크 확보 등) 기재

2. 사업 전체 로드맵

※ 전체 사업 단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및 종합적인 추진 일정 등 기재

3.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 자금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정부지원금) 집행계획 기재

* 신청사업의 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내 비목별 집행 유의사항 등에 근거하여 기재

※ 사업비 집행계획(표)에 작성한 예산은 선정평가 결과 및 제품·서비스 개발에 대한 금액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차감될 수 있음

o 지원금 운용 계획(분기별 작성-예시) (단위 : 천원)

구분	총액	'23. 8월	'23. 9월	'23. 10월	'23. 11월
합계	3,000	750	750	750	750
재료비		250	250		250
외주용역비			300	500	250
지급수수료		500		50	50
교육훈련비			200	200	200

※ 분기별 지원액에 맞추어 운용계획 작성(분기별 3,750천원 지원)

o 세부사업예산(지원금은 최대 3백만원 한도 이내로 작성) (단위 : 천원)

비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지원금(원)
합계			
재료비	• DMD소켓 구입	(00개×0000원)	
	• 전원IC류 구입	(00개×000원)	
외주용역비	• 시금형제작 (OOO제품플라스틱 금형제작)	(00식×000원)	
지급수수료	• 국내 OO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 등 포함	(1일×000원)	
교육훈련비	…		

4. 기타 자금 조달 계획

☐ 협업성

팀 구성	※ 팀에서 보유 또는 보유할 예정인 장비·시설, 직원 역량(경력·학력, 기술력, 노하우 등) 기재 ※ 사업 기간 내 채용 예정인 인력에 대해서만 기재 ※ 인력 채용 예정이 없는 1인 예비창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역량, 보유 장비·시설 등을 중심으로 기재
협업성	※ 창업 아이템과 관련하여 외부 협력 현황 또는 예정인 업무파트너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 협력 사항, 활용 계획 등 기재

〈서식 2〉

사업 참가 서약서

【참가 서약서】

- 신청인은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잘 숙지하고 이해했으며, 2024년 삼척시 도시재생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본 사업에 참가함에 따라 본인의 사업 아이템이나 발표하는 모습(앞, 뒤, 옆 등)이 촬영될 수 있고, 방송이나 언론사 등에 홍보 및 공개노출 되거나 자료로 남겨지고, 공개적으로 게시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을 제출하며,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사업은 물론 향후 여타의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을 받아들이겠습니다.

- 향후 지적재산권 등 수상 관련 민원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 2024년 삼척시 도시재생 청년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 시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참가자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사업 참가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겠습니다.
(※ 참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인)

<서식 3>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 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민원신청 처리를 위해 본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동의합니다.

○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민원 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연락불가로 인한 자료제공 불가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2024년 도시재생 청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증빙자료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e-mail 주소
-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동의함 □ **동의안함 □**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 **참여자 개별동의**

순번	성 명	동의 여부	확인일자	서 명
		동의함 □ 동의안함 □		
		동의함 □ 동의안함 □		
		동의함 □ 동의안함 □		
		동의함 □ 동의안함 □		
		동의함 □ 동의안함 □		
		동의함 □ 동의안함 □		
		동의함 □ 동의안함 □		
		동의함 □ 동의안함 □		
		동의함 □ 동의안함 □		
		동의함 □ 동의안함 □		
		동의함 □ 동의안함 □		

<서식 4>

이 행 각 서

상기 본인(_____)은 삼척시와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획·추진하는 2024년 도시재생 청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청렴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이행을 각서합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삼척시·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각 서 인

주 소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삼 척 시 장 귀하

청년창업 활성화

S-START

2024 삼척시 도시재생

청년창업 사업화지원사업 창업가 모집

모집대상
- 삼척시 내 예비·초기창업자
- 만18세~만 39세 청년

모집기간 2024. 5. 20.(월) ~ 2024. 6. 5.(수)

지원내용
- 지역가치 창출 및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7팀 이내/팀당 3백만원~6백만원 (자부담 10%)

사업설명회 2024. 5. 29.(수). 15:00

지원방법
- **메일접수** sam65_urc@naver.com
- **신청문의** 삼척시도시재생지원센터
- **창업활성화팀** (033) 576-0327

주최 | 삼척시 주관 | 삼척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삼척시 공고 제2024-860호

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주거비 지원 등 농어촌 유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유학생에게 정주의식을 강화시키고자 함

○ 농어촌 유학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도농어촌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농어촌 학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다.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안 제4조)
라. 삼척시 농어촌 유학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제11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05. 16.(목) ~ 06. 05.(수)(20일간)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삼척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청석로3길 16-41(평생학습관) (우편 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팩스: 033-570-3188 / 전화번호 : 033-570-4437

5.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삼척시 대표 누리집(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1]

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농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어촌 지역의 학교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유학"이란 관외 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관내 농어촌에 있는 학교로 전학하여 일정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제3조(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 유학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 유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2. 지역 특화 농어촌 유학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3.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삼척시 농어촌 유학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어촌 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3명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삼척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아동·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라. 농어촌 유학 관련 지역의 주민 대표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어촌 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견제출자: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